개인채무조정제도란

채무조정제도란 빚이 너무 많아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의 방법으로 상환조건을 변경하여 경제적으로 재기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개인채무조정제도 종류

신용회복위원회

• 신속채무조정

채무를 정상 이행중이거나 30일 이하로 단기 연체중인 채무자에 대한 신속한 채무조정 지원으로 연체 장기화를 방지

•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31 일 이상 89 일 이하인 단기 연체 채무자에 대한 선제적 채무조정을 통해 연체 장기화를 방지

• 개인워크아웃(채무조정)

90일 이상 장기 연체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신용회복과 경제적 회생을 지원

법원

• 개인회생

가용소득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동안 채무를 변제한 뒤 잔여채무는 면책하는 법원의 결정

• 개인파산

채무 상환능력이 없는 한계채무자에 대해 파산면책 결정을 통해 채무 상환 책임을 면제하는 법원의 결정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

- 신용회복위원회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 채무를 조정하는 사적 채무조정제도입니다.
- 채무조정안에 대해서는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하므로 절차가 투명하고 공정합니다.
- 채무조정 내용 등 주요정책을 결정하게 되는 최고의사결정기구에 채무자 및 채권자의 이익을 균형 있게 대변할 수 있는 분들이 참여하므로 채무조정의 중립성이 확보됩니다.
- 채무, 신용문제와 관련한 종합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채무조정의 요청)

2024 년 10 월 17 일부터 개인금융채권을 연체한 채무자는 대출을 받은 채권금융회사에 상환유예, 상환기간 연장, 이자율조정 등의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제 35 조 개인금융채무자는 개인금융채권을 연체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권금융회사등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채무조정 요청대상

계좌별 대출원금 3 천만원 미만의 개인금융채권을 연체 중인 자

채무조정 요청이 불가한 경우

- - 채무조정 요청권의 채무조정 합의가 해제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 - 개인금융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하여 소송, 조정 등의 소송 진행 중인 경우
- - 신용회복위원회·법원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경우

채무조정 요청이 거절될 수 있는 경우

- - 채무조정 요청 서류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수정 요청에 3회 이상 따르지 않은 경우
- - 채무조정 절차가 끝난 후 변제능력에 현저한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조정을 다시 요청하는 경우
- -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에 대해 채무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채무조정 내용

(금융회사 내부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상환유예	상환기간 연장	이자율조정	채무감면
거치기간 연장상환유예	만기연장분할상환 연장	• 약정이자율 이하	• 원리금 감면

[※] 채무조정 요청방법 및 제출서류는 개별금융회사 또는 금융협회 홈페이지 참조

「개인채무자보호법」주요내용

구분	주요 내용
	• 채무조정 요청 (3 천만원 미만 채권 적용)
	o - 연체채무자는 금융회사에 채무조정 요청 가능
	o - 금융회사가 채무조정을 거절할 경우 법원·신복위 채무조정 안내
① 금융회사 자체채무조정 활성화	○ - 채무조정 업무 위탁 가능(신복위 또는 추심회사)
	• 채무조정 내부기준 수립
	○ - 내부기준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조치·평가를 담당하는 임직원의 자격 및 교육
	의무(신용상담사 취득 또는 신용교육원 교육 24시간 이상 이수)

구분	주요 내용
② 추심부담 완화	 추심행위 규제 ○ - 추심 착수 3 일전 통지 ○ - 7 일 7 회로 추심 제한 ○ - 특정 시간대 및 특정 수단의 연락 제한 요청 가능 ○ - 재난 등 불가피한 사유가 확인될 경우 추심 유예 가능 ○ - 추심횟수에 포함되지 않은 추심연락 규정 (법에 의한 의무적 통지, 채무자 문의 답변, 채무자 미도달 등)
③ 연체부담 완화	 기한이익 상실시 이자부담 제한(5 천만원 미만 채권 적용) ○ - 기존 약정의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 연체이자 부과 금지 상각채권 양도시 장래이자 면제(3 천만원 미만 채권, 무담보채권 적용) ○ - 연체기간이 1 년을 초과하고 1 년 내 상환이력이 없는 채권에 대해서 양도시 장래이자 면제
④ 사전통지 의무 강화	

구분	주요 내용
	• 채권 양도 제한 (3 천만원 미만 채권 적용)
⑤ 채권매각 규율 강화	○ - 세 번 이상 양도된 채권 양도 제한
	○ - 채권원인서류가 미존재하거나 명의도용 등 채권·채무관계가 불명확한 경우 채권 양도 제한

개인파산면책제도 개요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때 채무의 정리를 위해 파산을 신청하고, 파산절차를 통해 변제되지 못한 채무는 면책을 구하는 법적 제도입니다.

개인파산면책제도의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 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여 경제적으로 재기·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낭비 또는 사기행위 등으로 파산에 이른 경우에는 면책이 허가되지 않습니다.

신청자격

파산 및 면책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재정 상태에 빠진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파산신청은 신청권자가 관할법원에 파산원인을 소명하여 파산선고 신청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신청권자	채권자, 채무자 및 채무자에 준하는 자(법정대리인, 파산회사 대표자, 이사, 지배인)
관할법인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
파산원인	지급불능, 지급정지, 채무초과의 상태 – 은행대출, 카드사용, 사채 등 원인을 불문하여, 신용 불량 여부도 상관없으며, 금액이 많고 적음도 상관없습니다

신청장소	ㅇㅇ지방법원 (파산과 또는 민사신청과) 접수계
파산신청서	ㅇㅇ지방법원 (파산과 또는 민사신청과) 접수계에서 배부합니다

개인파산 신청의 최종적인 목표는 면책을 받아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된다는 면책결정을 받기 위한 것이며, 파산신청은 면책 신청을 하기 위한 전 단계입니다. 이 안내문을 읽으실 때에는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중점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파산신청서류는 파산 및 면책 신청서, 진술서,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현재의 생활상황,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등 6 가지 서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법원에서 교부하는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의 구성

1. 파산 및 면책 신청서

신청인(채무자)란에는 성명을 한글로 정확하게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등록기준지를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에 적힌 대로 정확히 기재합니다. 채무의 변제에 사용할만한 재산이 있거나 부인권 대상 행위가 있는 등 파산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취지 2 항 및 신청이유 2 항, 3 항 중 괄호 부분을 삭제하고 날인하여야 합니다.

2. 진술서

채무자는 파산법원으로 하여금 채무자의 지급불능상황을 보다 상세히 파악하게 하기 위하여 파산 및 면책 신청시에 본인이 직접 다음과 같은 사항에 관하여 사실 그대로 기재한 진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의 두 번째 장부터가 진술서 양식입니다.

제 1 항

최종 학력(학교명도 기재), 경력 등의 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과거 경력은 근무하던 직장 등을 순서대로 기재합니다.

제 2 항

신청인의 현재까지의 생활을 되돌아보고 해당되는 사항이 있으면 기재합니다. 채무의 지급이 곤란할 정도로 경제 사정이 어려워진 이후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일부 채권자에게만 편파 변제한 경험,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한 경험 등을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제 3 항

이전에 채권자들과 채무의 지급방법(분할지급 등)에 관하여 교섭을 한 경우에 기재합니다. 교섭결과 합의가 성립되어 지급된 경우에는 그지급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소송·지급명령·압류·가압류명령 등을 받은 경우에는 법원명·사건번호·상대방(소송 등을 제기한 상대방 이름)을 기재하고 법원에서 송달받은 가압류 결정문,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소장 등의 사본을 첨부합니다.

제 4 항

신청인이 제기한 파산 및 면책 신청이 타당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채무 증대의 경위 및 지급이 불가능하게 된 사정에 관하여 해당 사유의 □ 안에 √표시를 하고, 지급이 불가능하게 된 시점을 기재한 다음, 구체적 사정을 날짜 순서에 따라 기재하여야 합니다(예를 들어, '2006 0. 0. ○○은행에서 5천만 원을 차용하여 ~에서 분식집을 개업하였음. 임차보증금으로 2천 5백만 원, 권리금으로 2천만 원, 시설비로 5백만 원 지급'과 같이 요약적인 기재 가능).

제 5 항

채무를 지급할 수 없게 된 이후에 새로이 차용하거나 채무가 발생한 사실을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3. 채권자목록

파산과 면책을 별도로 신청할 경우에는 각 신청서에 채권자목록을 별도로 제출하여야 하지만, 파산과 면책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채권자목록을 하나만 작성하여도 됩니다. 채권자목록은 신청인의 채무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중요한 자료입니다. 채권자목록 뒤에 설명되어 있는 <채권자목록 기재방법>을 잘 읽어보신 후 작성하시고, 같은 채권자에 대한 여러 개의 채무는 연이어 기재하되, 오래된 것부터 날짜 순서에 따라 기재하십시오. 채권자목록 양식은 채권자를 최대 17 명까지 기재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 이상의 채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수만큼 미리 채권자목록을 복사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자를 위하여 보증을 해 준 사람이 있으면 그 보증인도 구상채권자로서 별도의 채권자란에 가지번호(예:1-1,5-1등)를 붙여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채권자의 주소는 상세주소까지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채권자(보증인이 보증을 한 채권자)의 보증인란에 그 보증인의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또한 '채권자 주소록'란에는 위와 같이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모든 채권자의 주소를 반드시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보증인도 역시 채권자에 해당되므로 그 주소를 반드시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신용카드사용자는 해당 카드회사 또는 은행을 방문하여 신용카드사용내역서(신용카드를 마지막으로 사용한 날로부터 과거 1 년간)의 신용카드사용 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것)를 발급받은 후 그 사용내역서의 첫 장 아래쪽 여백에 채권자목록의 순번과 카드회사명을 기재하여 순번에 따라 첨부하여 주십시오.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거나 사채를 사용한 경우에는 차용증(약정서), 독촉장이나 부채증명원 등 채무액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기관에서 개인정보에 관한 자료를 주지 않을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http://www.fss.or.kr 02-3771-5114)에 문의하시면 해결이 됩니다.

Ж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여야 할 채권자 이름 및 주소를 일부라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또는 부정확하게 기재한 경우에는 파산·면책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만약 채무자가 특정인이 자신의 채권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그 채권자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면책결정을 받더라도 그 채권자에 대한 채무는 면책되지 않는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채무자는 자신이 알고 있는 채권자를 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4. 재산목록

재산목록은 신청인의 재산 보유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서류이므로 신청시의 보유재산을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합니다. 재산목록 요약표의 각항목의 □있음 □없음 란에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있음"에 √표시를 한 경우에는 해당란에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표에서 설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첨부자료는 재산목록에 기재한 순서에 따라 정리하여야 합니다. "없음"에 √표시를 한 경우에는 해당란을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험에 가입하여 신청서를 작성할 당시에도 보험이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는 3 항에 해약반환금을 기재하시고, 보험회사로부터 해약반환금 예상액이 기재된 서류를 작성받아 제출하십시오. 부동산, 차량 등의 등기·등록 명의가 신청인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타인 소유에 속하는 재산도 모두 기재한 후 그렇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야 하며, 시가증명자료와 부동산 등기부 등본 또는 자동차등록원부를 반드시 첨부하십시오.

재산목록에 기재할 재산을 고의로 누락하면 사기파산죄로 처벌될 수 있고, 면책불허가 사유에도 해당되므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5. 현재의 생활상황

신청인의 현재 생활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빠짐없이 기재하고 ☆표에서 설명하는 자료를 첨부합니다. 특히 주거상황에 관하여서는 그 내용을 정확히 기재하고 첨부자료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6.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누구의 수입으로 어떻게 생계를 꾸려 나가고 있는지 알 수 있도록 신청일이 속한 달의 전달의 수입·지출 내역을 가계수지표의 해당란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수입·지출」란에는 신청인 본인의 수입·지출 이외에 가계를 같이하고 있는 사람의 수입·지출도 함께 기재하여야 합니다. 또한 채무자의 가용소득란에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한다고 가정할 경우의 가용소득(월 평균 소득에서 부양가족을 기준으로 한 보건복지부 공표 기준 중위소득 100 분의 60 을 뺀 소득)을 기재합니다.

파산·면책 신청시 첨부할 서류

가.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이혼내역 포함) 및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내역 및 개명, 주민등록번호 변동사항 포함,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명서) 각 1 부

나.

진술서(채권자목록, 재산목록, 현재의 생활상황,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1 부 : 파산 및 면책 신청서 양식에 첨부되어 있으므로 5.항에서 설명한 대로 작성하여 첨부하면 됩니다.

다.

기타 첨부서류 : 파산 및 면책 신청서 양식 중 각 해당란 ☆표에서 설명하는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자료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기재한 진술서와 그에 대신할 수 있는 자료가 될 만한 것을 첨부합니다.

라.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각 1 부 : 대리인에 의하여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합니다(대리인에 의하여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였더라도 심문기일에는 반드시 본인이 출석하여야 합니다).

면책의 효력

가. 채무자에 대한 효력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당연히 복권되고, 공·사법상의 신분상 제한이 소멸됩니다. 그러나 채무 중 일부에 대하여서만 면책을 허가하는 일부 면책허가결정은 동시에 일부 면책불허가결정의 성질을 띠고 있어 "면책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연히 복권되지 않습니다. 일부 면책허가결정을 받으신 분은 면책 받지 못한 채무를 변제하신 후 복권절차를 신청함으로써 파산선고로 인한 불이익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나. 파산채권자에 대한 효력

채무자는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채권을 변제하여야 하는 책임이 면하게 됩니다. 면책결정(일부면책은 제외)이 확정되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 제 6 조 제 5 항에 의하여 "연체 등" 정보는 해제가 되나, 파산으로 인한 면책결정 사실이 특수기록정보로 7 년간 등록됩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한국신용정보원에 면책결정 확정통지를 하게 되므로 이를 통하여 면책결정 확정 후 채권 금융기관의 추심행위는 상당 정도 억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된 이후 파산채권자가 면책된 사실을 알면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한 경우에는 채권자를 금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 면책에서 제외되는 채무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더라도 다음의 각 청구권에 대한 변제 책임은 소멸하지 않으므로, 채무자는 이를 계속하여 변제하여야 합니다.

(1) 조세

- (2)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과태료
- (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4)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 (5)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 (7)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 (9)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라. 보증인에 대한 효력

면책은 파산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기타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 및 파산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보증인은 면책과 상관없이 자신의 보증채무를 변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보증인은 보증채무를 변제하더라도 면책 받은 채무자에게 구상권(대신 갚은 돈의 청구)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마. 한 번 내려진 면책결정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된 후에도 사기파산죄에 관하여 채무자에 대한 유죄의 판결이 확정된 때와 채무자가 부정(不正)한 방법으로 면책을 얻은 경우에는 파산채권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파산법원의 직권으로 면책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복권(復權)

가. 복권(復權)이란?

면책이 불허된 경우(일부면책 포함)에 채무자가 변제 기타 방법에 의하여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변제나 면제, 상계 등으로 그 채무를 면한 때에는 채무자의 신청과 법원의 심리절차를 거쳐 복권됩니다.

나. 복권의 효력

복권이 되면 파산선고를 받기 전과 같은 상태로 돌아가며, 파산선고로 인한 공·사법(公·私法)상의 불이익이 없어집니다.

다. 복권신청시 소요되는 비용

- (1) 신청수수료 : 1,000 원 → 정부수입인지를 구입하여 복권신청서에 풀로 붙임.
- (2) 송달료 : 52,000 원 + (채권자수 × 5,200 원 × 3) → 각 법원 구내 은행에 납부한 후 송달료납부서를 받아서 접수계에 제출.
- (3) 정부수입인지는 각 법원 구내 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 무료신청지원 및 법률상담안내

재정적으로 특히 어려운 채무자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인회생·개인파산 소송구조제도, 서울회생법원 내의 NEW-START 상담센터에서의 무료법률상담, 신용회위원회의 개인도산절차지원제도,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개인회생 및 파산지원센터 등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 법률지원을 돕고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구체적인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변호사, 법무사, 대한법률구조공단(www.klac.or.kr 전화 국번 없이 132) 등에서 유/무료의 법률상담 등을 통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면책불허가 사유

모든 파산자가 법원으로부터 면책을 허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파산자가 면책신청을 하면 법원은 파산자를 심문하여 사정을 듣고, 채권자로부터도 의견을 청취한 다음 면책허가결정을 할 것인지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다음에서 예시한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564 조에 의해 원칙적으로 면책허가결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면책이 허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파산의 원인이 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 계속하여 변제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파산자로서 여러 가지 제약을 받게 됩니다. 이점 신중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면책불허가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면책불허가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부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 채무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 채무자가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
- 채무자가 파산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원래 대물변제 약정이 없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하는 행위를 포함)
-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 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
-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기 전 1 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 과거 일정기간(개인파산 면책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부터 5년)내에 면책을 받은 일이 있는 때

개인회생제도 개요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장래에 안정적이고 정기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개인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채무를 조정 받아 법원이 허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3 년이내(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5 년이내) 채권자에게 분할변제를 하고 남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채무자는 채권자 목록과 변제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법원이 임명한 회생위원은 채무자의 재산과 수입을 조사하여야 합니다. 법원이 변제계획안을 허가하면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해야 하고 변제계획을 모두 이행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 10 억원, 담보채무 15 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
-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

신청방법

개인회생사건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개인회생신청을 하고자 하는 채무자는 먼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신청의 취지 및 원인,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 등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 개인회생채권자목록
- 재산목록

-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목록
- 신청일전 10년 이내에 화의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경우 관련서류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료
- 재산증명서류
- 진술서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변제계획안
- 기타 신청자 개인별로 사건내용에 따라 필요한 서류

개인워크아웃(채무조정)

지원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과중 채무자

- 연체기간 3 개월(90 일) 이상
-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 억원 * 이하
 - *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원 이하
- 최근 6개월내 신규 발생 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
-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위원회 정관에 의해 설치된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

채무조정대상 채무

협약가입 채권금융회사의 무담보채무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가 합의하여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의한 채무조정에 준하는 정도로 상환조건이 변경된 채무
- 정책자금대출 등 법률에 의해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 기타 신용회복지원협약상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유의사항신용회복지원협약 제 4 조(신청대상)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분은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개인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제 9 조에 의한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제 10 조에 의한 채권금융회사의 동의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개인채무조정 신청이 기각된 날부터 1 년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만, 그 기각 사유를 해소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재산을 도피·은닉하거나 고의로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한 자
- 어음·수표 부도거래처로서 부도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자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및 동 시행령에 따른 금융질서문란자
-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권자에 대한 채무(이하 '협약외채무'라 한다)의 원금이 동 원금과 채권금융회사에 대한 채무원금을 합산한 원금총액(이하 '원금총액'이라 한다)의 20/100 이상인 자. 다만,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권자가 이 협약의 채무조정에 준하여 상환조건 변경에 동의한 경우 당해 채무는 제외할 수 있다.
- 채무조정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채무의 원금이 원금총액의 30/100 이상인 자. 다만, 기존 채무의 상환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당해 채무는 제외할 수 있다.
-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중인 자 또는 대출의 무효, 취소를 다투거나 분쟁상태에 있는 자
- 고의로 채무이행을 지연할 목적으로 개인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자
- 채무자의 재산 및 수입에 비추어 개인채무조정 없이 총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자

지원내용

이자감면:

이자와 연체이자 전액 감면

분할상환:

대출의 종류, 총 채무액, 변제가능성, 담보, 채무자의 신용, 이행현황 등을 고려하여 무담보채무 최장 10년, 담보채무 최장 35년 이내 분할상환

채무감면: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따라 미상각채권 원금은 0~ 30% 범위내에서 감면, 상각채권 원금은 20~70% (사회취약계층은 최대 90%) 범위내에서 감면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지원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과중 채무자

- 연체기간 31 일 이상 89 일 이하
-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원 * 이하
 - *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원 이하
- 최근 6 개월내 신규 발생 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

채무조정대상 채무

협약가입 채권금융회사의 무담보채무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가 합의하여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의한 채무조정에 준하는 정도로 상환조건이 변경된 채무
- 정책자금대출 등 법률에 의해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 기타 신용회복지원협약상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유의사항

신용회복지원협약 제 4 조(신청대상)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분은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개인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제 9 조에 의한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제 10 조에 의한 채권금융회사의 동의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개인채무조정 신청이 기각된 날부터 1 년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만, 그 기각 사유를 해소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재산을 도피・은닉하거나 고의로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한 자
- 어음·수표 부도거래처로서 부도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자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및 동 시행령에 따른 금융질서문란자
-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권자에 대한 채무(이하 '협약외채무'라 한다)의 원금이 동 원금과 채권금융회사에 대한 채무원금을 합산한 원금총액(이하 '원금총액'이라 한다)의 20/100 이상인 자. 다만,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권자가 이 협약의 채무조정에 준하여 상환조건 변경에 동의한 경우 당해 채무는 제외할 수 있다.
- 채무조정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채무의 원금이 원금총액의 30/100 이상인 자. 다만, 기존 채무의 상환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당해 채무는 제외할 수 있다.
-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중인 자 또는 대출의 무효, 취소를 다투거나 분쟁상태에 있는 자
- 고의로 채무이행을 지연할 목적으로 개인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자
- 채무자의 재산 및 수입에 비추어 개인채무조정 없이 총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자

지원내용

이자율인하:

채무과중도에 따라 약정이자율의 30~70% 이자율 인하(최저 3.25%, 최고 8%)

분할상환:

대출의 종류, 총 채무액, 변제가능성, 담보, 채무자의 신용, 이행현황 등을 고려하여 무담보채무 최장 10 년, 담보채무 최장 35 년 이내 분할상환

채무감면:

연체이자에 한하여 감면

※ 취업프로그램*을 이수 후 1 년 이내 취업에 성공한 자는 최저이자율 3.25% 적용

*고용노동부「국민취업지원제도」, 소상공인진흥공단「희망리턴패키지」

사전채무조정 특례 신청대상 및 지원내용

신청대상

• 단기연체 상태의 취약채무자로 소득 및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자

구분	취약채무자	소득	연체기간	재산
1	기초수급자			
2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증장애인)	-	31 일~89 일	재산평가액이 무담보채무 총액 이하
3	만 70 세 이상 고령자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		

- * 최저생계비의 경우「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기준 적용
- 채권금융회사 총채무액 15 억원* 이하

	○ * 무담보채무 5 억원 이하, 담보채무 10 억원 이하
	•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
	• 그 외 신용회복지원협약 제 4 조제 5 항에 따른 신청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이자 및 연체이자 감면
지원내용	• 최장 10년 이내 상환기간 연장 및 원금분할상환
	● 원금 0~30% 범위 내 감면

신속채무조정

지원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과중 채무자

- 연체기간 30 일 이하 (정상이행자 포함)
-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 억원 * 이하
 - *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원 이하
- 최근 6 개월내 신규 발생 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
- 연체상태가 아닌 경우에도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자
 - ①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
 - ②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채무자
 - ③ 신청일 현재 개인신용평점 하위 10%인 채무자
 - ④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채권금융회사에 5일 이상 연체한 횟수가 3회 이상인 채무자
 - 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 3 조에서 정한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긴급상황으로 신속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채무자

채무조정대상 채무

협약가입 채권금융회사의 무담보채무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가 합의하여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의한 채무조정에 준하는 정도로 상환조건이 변경된 채무
- 정책자금대출 등 법률에 의해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 기타 신용회복지원협약상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유의사항

신용회복지원협약 제 4 조(신청대상)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분은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개인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제 9 조에 의한 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 제 10 조에 의한 채권금융회사의 동의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개인채무조정 신청이 기각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만, 그 기각 사유를 해소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재산을 도피·은닉하거나 고의로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한 자
- 어음·수표 부도거래처로서 부도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자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및 동 시행령에 따른 금융질서문란자
-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권자에 대한 채무(이하 '협약외채무'라 한다)의 원금이 동 원금과 채권금융회사에 대한 채무원금을 합산한 원금총액(이하 '원금총액'이라 한다)의 20/100 이상인 자. 다만,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권자가 이 협약의 채무조정에 준하여 상환조건 변경에 동의한 경우 당해 채무는 제외할 수 있다.
- 채무조정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채무의 원금이 원금총액의 30/100 이상인 자. 다만, 기존 채무의 상환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당해 채무는 제외할 수 있다.
-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중인 자 또는 대출의 무효, 취소를 다투거나 분쟁상태에 있는 자
- 고의로 채무이행을 지연할 목적으로 개인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자
- 채무자의 재산 및 수입에 비추어 개인채무조정 없이 총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자

지원내용

상환기간 연장 및 분할상환:

대출의 종류, 총 채무액, 변제가능성, 담보, 채무자의 신용, 이행현황 등을 고려하여 최장 10 년이내에서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연장된 상환기간 범위 내에서 원리금 분할상환

상환유예:

원리금 분할 상환 전 또는 상환 중 6개월 단위로 최장 3년 범위 내에서 상환유예 가능(단, 최고 이자율 연 15%)

채무감면:

연체이자에 한하여 감면

신속채무조정 특례

신청대상 및 지원내용

	• 아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 1. 연체 30 일 이하 단기연체자(1~30 일)
	○ 2. 연체 위기자(연체없음)
	■ (1) 개인신용평점 하위 10% 이하
신청대상	■ (2)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아래 중 하나에 해당
ଅଟ୍ୟାଟ	- 연소득 4,500 만원 이하
	- 만 34세 이하
	■ (3)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
	■ (4) 신청 전 1 개월 이내에 3 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자

■ (5) 최근 6개월 이내 5일 이상 연체횟수가 3회 이상인 자

	 (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한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긴급상황으로 신속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이 인정하는 자
	• 채권금융회사 총채무액 15 억원* 이하
	○ * 무담보채무 5 억원 이하, 담보채무 10 억원 이하
	• 재산평가액이 무담보채무 총액 이하
	•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
	• 그 외 신용회복지원협약 제 4 조제 5 항에 따른 신청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채무과중도에 따라 대출약정이율의 30~50% 인하 *(하한 3.25%)
	○ *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70 세 이상자 : 연체이자 및 이자 전액 감면, 원금 0~15% 범위 내 감면
TI OLI II O	• 최장 10 년 범위 내 상환기간 연장 및 원리금분할상환
지원내용	● 원리금 분할 상환 전 6개월 상환유예 지원(최대 3년, 연 3.25%* 유예이자율 적용)
	○ *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70 세 이상자 : 유예이자 면제
	• 연체이자 감면

채무자 구제제도 비교표

구 분	개인파산	개인회생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신속채무조정
운영주체	법원		신용회복위원회		
대상 채무자	상환불가자 (소득·재산-無)	상환불능 상태이나 고정소득자	연체기간 90 일이상	연체기간 31 일~89 일	연체기간 30 일이하
대상채권	제한없음 ※세금, 건보료 면책불가	제한없음 ※세금, 건보료 사채 등 포함	신용회복지원협약 가입 채권금융회사 (대부업체포함) ※세금, 건보료, 개인채무 등 비금융채무 조정불가		
채무액	제한없음	무담보 10 억 담보 15 억	무담보 5 억 담보 10 억 (사업자 30 억)	무담보 5 억 담보 10 억	무담보 5 억 담보 10 억
변제기간	-	3~5 년	10 년 이내 (담보 35 년)	10 년 이내 (담보 35 년)	10 년 이내

구 분	개인파산	개인회생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신속채무조정
채무감면	재산처분 배분 후 잔여채무면책 (원금감면 100%)	보유 재산 이상변제 (원금감면 평균 70%)	이자채권 전액, 원금감면 최대 상각채권 70%, 소외계층 90% (원금감면 평균 41%)	연체이자 감면, 약정이자율 30~70% (원금감면 0%)	연체이자 감면, 약정이자율 최고 15% (단,카드 10%)
담보대출	제외(별제권)		조정가능	조정가능	조정불가
보증인 독촉여부	보증인에 대한 독촉 가능		보증인에 대한 독촉 불가		
법적효력	판결효력		당사자간 계약효력(민사)		
채무조정 정보 공유기간	면책결정 후 5 년간	변제계획 인가 후 3~5 년간	신용회복 확정 후 1 년간	미등록	미등록

채무조정제도 장단점 비교

구 분	공적채무조정(법원-개인회생·파산)	사적채무조정(신용회복위원회)
신청(법률자문) 비용	비용 과다(80~200 만원)	비용 저렴(5 만원) (기초수급자 등 신청비 면제)
독촉 중지	약 1 개월~2 개월 소요	접수 익일 즉시 독촉 중지
신청 절차	인가·면책시까지 장기간 소요(6~12 개월)	확정시까지 비교적 단기(2 개월)
신청 서류	서류 복잡	서류 간편
보증인 독촉여부	보증인에게 독촉 가능	보증인에 대한 독촉 중지
소액채무 조정여부	기각될 가능성 높음	소액채무도 조정 가능

구 분	공적채무조정(법원-개인회생·파산)	사적채무조정(신용회복위원회)
생계비 인정범위	만 19 세 이상 만 65 세 이하 동거가족 생계비 불인정	생계비 인정금액이 개인회생보다 많음 (대학생 자녀 · 전업주부도 부양가족 생계비 인정)
신청 접근성	전국 14개 관할 법원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App, Web 비대면 신청 가능
공공기록 등재 여부	개인회생 - 3~5 년 개인파산 - 5 년	채무조정 - 1 년 단기 공유 연체전·이자율 채무조정 - 미등재
신용상담여부	없음	신용상담을 통해 채무문제를 진단하고 가장 적합한 해결방안을 제시
신용도 상승	3~5 년간 신용점수 상승 불가	공적구제제도에 비해 신용점수 상승에 유리 신용도 상승을 위한 채무조정 이용자에 대한 신용복지컨설팅 운영
신용카드·서민금융	이용 제한	이용 가능

구 분	공적채무조정(법원-개인회생·파산)	사적채무조정(신용회복위원회)
채무 감면	감면 폭이 사적 채무조정 대비 큼 (개인회생 - 평균 원금 70% 감면)	감면 폭이 개인회생 대비 작음 (채무조정 - 평균 원금 41% 감면)
상환 기간	단기 상환(3~5년)	장기 상환(10년 이내)
조정가능 채무	사채, 세금, 건강보험료 등) 모든 채무 지원 가능 (파산 - 세금, 건보료 면책 불가)	협약된 채권금융회사) (금융권·대부업 등) 채무에 한해 조정 가능
지원 여부	채권자 동의 불요	채권자 과반수 동의 필요

새출발기금 프로그램

지원대상

[새출발기금.kr]에서 지원대상 여부 확인 가능

지원대상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코로나 피해자
	• 코로나 19 피해로 손실보상금 또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수령한 자
① 코로나 19 피해	 코로나 19 피해로 사업자대출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받은 자 * 2020 년 4 월부터 2022 년 8 월 29 일까지
	 2020 년 4월 1 일부터 2024 년 6월 30 일까지 기간 중 사업한 사실이 있는 자
	• 기타 코로나 19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 가능한 자
	(개인사업자)『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등록한자(2020년 4월 이후 폐업자 포함)
	(법인 소상공인)『부가가치세법』 제 8 조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등록된 자로서
② 개인사업자·법인 소상공인	『소상공인기본법』제 2 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되는 자
	※ 부동산임대·매매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제외

지원대상

(부실우려차주) 금융회사 채무 중 어느 하나라도 연체일수가 10 일 이상 89 일 이하이거나, 연체일수가 10 일 미만이면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2020년 4월 이후 폐업(개인사업자만) 혹은 6개월 이상 휴업중인 자(폐업신고 및 휴업신고 필요)
- 국세, 지방세 체납으로 공공기록정보가 등재된 자
- 코로나로 인해 '22.8.29. 이전 사업자대출의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이용하였으나 추가 만기연장이 거절된 자 또는 이자 등 상환유예 이용중인 자

③ 부실우려차주 부실차주

• 개인신용평점 하위 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등 *차주의 도덕적 해이 방지 등을 위해 세부 판단기준은 비공개

(부실차주) 금융회사 채무 중 어느 하나라도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자

• 연체 3 개월 이상 된 신용대출을 보유하고 계신 경우, 새출발기금 플랫폼(새출발기금.kr)에서 매입형 채무조정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새출발기금 상담센터(1660-1378)

(공통사항)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 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인 자

• ※ 기존 대출을 상환할 목적으로 차입한 대출은 신규 대출 비율 산정 대상에서 제외

유의사항

• 기존 개인회생·개인파산 및 신용회복지원제도 이용자는 새출발기금 프로그램의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채무조정대상 채무

『신용회복지원협약』, 『법인소상공인 신용회복지원 협약』, 『새출발기금 지원 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로부터 받은 사업자대출

지원불가 대출

- 코로나 피해 차주 지원 정책의 취지에 맞지 않는 대출
-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주택구입대출, 부동산임대·매매업 관련 대출, 전세보증대출, 채권(매출채권, 주식, 예금 등)담보대출, 차량 등 관련 금융리스, 공장재단채권, 법인대표자의 가계대출 등
- 채무의 특성상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조정이 어려운 대출
- 할인어음, 무역금융, SPC 대출, 보험약관대출, 기타 처분에 제한이 있는 대출, 법원 회생절차 진행 중인 대출 등
- 체납세금 등 협약 미가입자 대출
- 개인간 사적채무, 국세·지방세 등
- 기타 새출발기금 협약 및 신용회복지원협약상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대출
- 채무자가 채무조정 신청을 원하지 않는 대출

조정한도

담보	무담보	계
10 억원	5 억원	15 억원

^{*} 총채무액 기준

지원내용

※ 연체 90일 이상 무담보대출(신용대출)은 새출발기금(주) 별도 문의

지원내용	지원내용		
공통	신청비용 면제, 연체이자 감면		
거치기간	최장 1 년		
	부동산담보대출 최장 3 년		
거치이자율	약정금리 적용		
상환기간	최장 10 년		

지원내용				
	부동산담보대출 최장 20 년			
상환이자율	무담보대출· 보증서대출· 담보대출	연체 30 일 이하	약정금리 적용 (상한 이자율 9% 적용)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연체 89 일 이하	상환기간*에 따라 상환이자율 차등화 *3 년 이하, 5 년 이하, 5 년 초과(단, 부동산담보대출은 5 년 이하, 10 년 이하, 10 년 초과)	
	부동산담보대출	출 연체 90 일 이상	상환기간*에 따라 상환이자율 차등화 *5 년 이하, 10 년 이하, 10 년 초과	
	동산담보대출		상사법정이율* 이내 (조정안대로 완제 시 이자 전액 감면) *2022 년 기준 연 6%	원금분할상환
유예기간	최장 3 년			

지원내용 유예이자율 2%

신용회복위원회 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제도

- □ 신속면책제도는 소득발생 가능성이 적고, 보유재산이 적거나 없는 취약채무자에 대하여 파산관재인 선임 없이 파산선고와 동시에 폐지 및 면책을 진행하는 절차이다.
- o 신복위는 개인 채권자가 없고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기초생활수급자, 70 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중 파산 절차를 희망하는 취약계층의 법원 접수 절차를 지원하며,
- o 법원은 신복위가 채무자의 소득, 재산, 채무내역을 조사·작성하여 제출한 신용상담보고서를 참고하여 심사 및 채권자 의견 청취를 거쳐 신속면책제도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 □ 신속면책제도 시행으로 파산 및 면책 절차가 간소화되면 사건 처리기간이 단축되고, 통상 30~50만원 수준인 파산관재인 선임 비용도 절감할 수 있어 취약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속면책제도 절차 흐름도 현행 신속면책 신용상담보고서 발급 신용상담보고서 발급 (채무내역, 소득 및 재산 등 반영) (채무내역, 소득 및 재산 등 반영) 위 취약계층 대상 신속면책 신청서 작성 파산·면책 신청 파산·면책 신청 서면심사 서면심사 보정명령, 채무자심문 예납명령 파산선고 (관재인 선임) 법 채권자 의견청취 파산관재인 재산관리·조사 채권자집회 원 (의견청취기일) 파산선고, 폐지 및 면책결정 파산관재인조사 (파산재단 환가·배당) **파산절차폐지**(종결) 면책(불허가)결정

한국자산관리공사 채무조정

지원대상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인수한 채무의 채무자

지원내용

○ 채무 감면 및 장기분할 상환 등을 제공함으로써 미상환 연체채무의 완전한 종결 및 정상적 경제주체로의 복귀 지원

○ 일시상환

- 일반 감면: 채무자의 특수성(연령, 부양가족, 채권의 연체기간)을 고려해 30~60% 감면율 적용
- 사회취약계층 및 특수채무관계자 감면 : 장애인, 65 세 이상 고령자 등 29 종의 사회취약계층 및 특수채무관계자에 대하여 60~90% 감면율 적용
- ㆍ 채무관계자가 회수가능한 재산을 소유한 경우에는 그 확인재산의 시가평가액을 고려하여 채무부담액을 산정함

○ 분할상환

- 일반 감면 : 채무자의 특수성(연령, 부양가족, 채권의 연체기간)을 고려해 30~60% 감면율 적용하여 최장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매월 상환
- · 채무부담액이 2 천만원 이상인 채무관계자 또는 사회취약계층이 분할상환하는 경우 각각 12 년, 15 년 이내에서 분할상환 가능
- 사회취약계층 및 특수채무관계자 감면 : 장애인, 65 세 이상 고령자 등 29 종의 사회취약계층 및 특수채무관계자에 대하여 60~90% 감면율 적용
- · 채무관계자가 회수가능한 재산을 소유한 경우에는 그 확인재산의 시가평가액을 고려하여 채무부담액을 산정함

○ 조기 상환 추가 감면

- 채무조정 약정 체결 후 1 년 이상 경과하고 분할상환금을 12 회차 이상 납부한 채무관계자가 잔여 채무 부담액과 비용부담액을 일시에 상환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기 상환 신청 시기에 따라 11~19% 추가 감면
- 채무관계자 및 그 가구원이 보건복지부의 금융취약계층 자립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사업이행 완료한 경우 조기 상환 신청 시기, 분할상환금 상환 회차에 관계없이 15% 추가감면율 적용

○ 성실상환자의 잔여채무 감면

- 약정금액의 75% 이상을 성실히 상환하던 중 불가피한 사유(1~3 급 중증장애로 인한 노동력 상실, 보건복지부장관 고시 중증질환발병 등)로 채무부담액을 상환할 수 없는 경우 잔여채무 감면

채무조정제도 선택기준

1. 채무 및 연체 정보

담보채무, 무담보채무, 6 개월내 신규발생채무금 비율, 연체 기간 및 연체액

2. 자산

자산을 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 청산가치 산정

3. 소득

소득의 안정성: 소득의 지속 가능성과 일관성 여부 현재 소득 대비 상환 가능한 금액

4. 부양가족수

부양 가족 여부: 최저생계비 산정